

JUBILEE CHAPEL 쥬빌리교회

(180114 교인총회 확정)

THE CONSTITUTION 정관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정관전문

Jubilee Chapel, as a liberating faith community AND missional church which equips people with a Christian worldview, (1) proclaims the Word of God(expository ministry), (2) restores the biblical value of family(family ministry), (3) sets people free from a dichotomic bondage(worldview ministry), (4) encourages the royal priesthood of all believers at workplace and society(stewardship ministry) -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Jn. 8:31b-32)

쥬빌리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신앙공동체이자 선교적 교회로서 (1)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고(강해 사역), (2)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고(가정 사역), (3) 신자들을 이원론적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세계관 사역), (4) 모든 신자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격려한다(청지기 사역). -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b-32)

ARTICLE I NAME 명칭

The name of this society is Jubilee Chapel.
단체의 이름은 쥬빌리교회라 부른다.

ARTICLE II PURPOSE 목적

Jubilee Chapel exists to:

1. Lead people t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for salvation and for spiritual growth;
2. Help them discover where they **BELONG** in the family of God, and;
3. Disciple them to **BECOME** what God created them to be.

쥬빌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1.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고
2.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음을** 알도록 돕고
3.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THE BYLAWS 세칙

PART I AFFILIATION 소속

Jubilee Chapel shall be affiliated with 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through its Lower Pacific District. It shall seek to support the denomination in such ways as sending delegates to district and national conferences and supporting its financial program and affiliate organizations. However, while being a member of 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this Church shall remain self-governing and its own highest authority under God.

쥬빌리교회는 캐나다 복음주의 독립교단(EFCC) 하태평양 노회(LPD)에 소속되며 노회와 전국 총회에 대표를 파송하고, 재정적인 프로그램과 소속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교단을 후원한다. 또한 쥬빌리교회는 EFCC 멤버교회지만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하나님 아래서 스스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다.

PART II STATEMENT OF FAITH 신앙고백

The Doctrinal statement of 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shall be the doctrinal statement of this society. This provision was formerly unalterable.

본 교회의 신앙고백은 EFCC의 신앙고백과 같다. 이 조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God's gospel originates in and expresses the wondrous perfections of the eternal, triune God.**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함에 뿌리를 두며 그의 놀라운 완전함을 표현한다.

We believe in one God, Creator of all things, Holy, infinitely perfect, and eternally existing in a loving unity of three equally divine Person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Having limitless knowledge and sovereign power, God has graciously purposed from eternity to redeem a people for Himself and to make all things new for His own glory.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그 분은 무한히 완전하시고, 세 분의 동등한 신적 인격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로 영원히 존재하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지식과 주권적 힘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그를 위하여 자비하심 가운데 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

2. God's gospel is authoritatively revealed in the Scriptures.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 속에 권위 있게 계시된다.

We believe that God has spoken in the Scriptures, both Old and New Testaments, through the words of human authors. As the verbally inspired Word of God, the Bible is without error in the original writings, the complete revelation of His will for salvation, and the ultimate authority by which every realm of human knowledge and endeavor should be judged. Therefore, it is to be believed in all that it teaches, obeyed in all that it requires, and trusted in all that it promises.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언어를 통해 구약과 신약으로 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믿는다. 축자적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원전의 기록에 오류가 없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완전하게 계시하셨으며, 인간의 지식과 노력의 모든 영역은 성경의 궁극적 권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순종해야 하며, 성경의 약속하는 모든 것들을 신뢰해야 한다.

3. God's gospel alone addresses our deepest need.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말해준다.

We believe that God created Adam and Eve in His image, but they sinned when tempted by Satan. In union with Adam, human beings are sinners by nature and by choice, alienated from God, and under His wrath. Only through God's saving work in Jesus Christ can we be rescued, reconciled and renewed.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나 그들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믿는다. 인간은 아담과 연합되어 본성뿐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도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의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조되고, 화해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

4. God's gospel is made known supremely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가장 훌륭하게 드러난다.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God incarnate, fully God and fully man, one Person in two natures. Jesus— Israel's promised Messiah—was conceived through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lived a sinless life, was crucified under Pontius Pilate, arose bodily from the dead,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s our High Priest and Advocat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두 개의 본성을 지니신 한 인격임을 믿는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음을 믿는다. 그는 죄 없는 인생을 사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

5. God's gospel is accomplished through the work of Christ.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다.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as our representative and substitute, shed His blood on the cross as the perfect, all-sufficient sacrifice for our sins. His atoning death and victorious resurrection constitute the only ground for salvation.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이며 대리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하고도 충분한 희생으로서 그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다. 그의 속죄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를 형성한다.

6. God's gospel is appli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적용된다.

We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in all that He does, glorifies the Lord Jesus Christ. He convicts the world of its guilt. He regenerates sinners, and in Him they are baptized into union with Christ and adopted as heirs in the family of God. He also indwells, illuminates, guides, equips and empowers believers for Christ-like living and service. 우리는 성령께서 그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는다. 그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는 죄인들을 중생케 하시며 그 안에서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상속자로서 양자가 된다. 그는 또한 신자들 속에 거하시며 신자들을 조명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봉사하도록 준비 시키시고 힘을 부여하신다.

7. God's gospel is now embodied in the new community called the church.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구현된다.

We believe that the true church comprises all who have been justified by God's grace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alone. They are united by the Holy Spirit in the body of Christ, of which He is the Head. The true church is manifest in local churches, whose membership should be composed only of believers. The Lord Jesus mandated two ordinances,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which visibly and tangibly express the gospel. Though they are not the means of salvation, when celebrated by the church in genuine faith, these ordinances confirm and nourish the believer.

우리는 진정한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믿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에 의해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진정한 교회는 지역 교회들 안에서 나타나며 교회의 회원은 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개의 성례들을 제정하셨으며 그것들은 가시적이고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복음을 표현한다. 비록 그것들은 구원의 방편들은 아니지만 교회에 의해 진실한 믿음으로 행해질 때 신자들을 확증하고 그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한다.

8. God's gospel compels us to Christ-like living and witness to the world.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세상에 증인된 삶을 촉구한다.

We believe that God's justifying grace must not be separated from His sanctifying power and purpose. God commands us to love Him supremely and others sacrificially, and to live out our faith with care for one another, compassion toward the poor and justice for the oppressed. With God's Word, the Spirit's power and fervent prayer in Christ's name, we are to comba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obedience to Christ's commission, we are to make disciples among all people, always bearing witness to the gospel in word and deed.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및 목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최고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상호 돌봄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라고 명령하신다.

9. God's gospel will be brought to fulfillment by the Lord Himself at the end of this age.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대의 마지막에 주님 자신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We believe in the personal, bodily and glorious return of our Lord Jesus Christ with His holy angels when He will bring His kingdom to fulfillment and exercise His role as Judge of all. This coming of Christ, at a time known only to God, demands constant expectancy and, as our blessed hope, motivates the believer to godly living, sacrificial service and energetic mission.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완성하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하실 때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인격적이고 육체적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인 기대를 요구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축복된 희망으로서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희생적인 봉사를 하며 활기차게 선교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10. God's gospel requires a response that has eternal consequences.

하나님의 복음은 반응을 요구하며 그 반응에 따라 영원한 결과가 발생된다.

We believe that God commands everyone everywhere to believe the gospel by turning to Him in repentance and receiving the Lord Jesus Christ. We believe that God will raise the dead bodily and judge the world, assigning the unbeliever to condemnation and eternal conscious punishment and the believer to eternal blessedness and joy with the Lord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Amen.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육체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와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믿는 자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할 것을 믿는다.

PART III PROPERTY 교회자산

1. This Church shall have the power to receive, either by gift or purchase, and to hold such real and personal property as is authorized by the laws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and is deemed necessary for the business of this Church; and shall have the power to dispose of such property by mortgage, deed or otherwise. All property shall be held in the name of the Church or appointed nominees.

교회는 BC주 법령을 따라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헌물 혹은 구입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증서 등의 방법으로 자산처분이 가능하다. 모든 부동산은 교회 혹은 지정된 사람의 명의로 유지된다.

2. In the case of a division of this church,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is church shall belong to those who most closely

abide by its Constitution and By-laws. If this ruling cannot be determined amicably, the decision shall be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Lower Pacific District of 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교회가 분열할 경우, 교회의 부동산과 자산은 헌법과 시행세칙을 가장 근접하게 따르는 이들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절차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는 EFCC의 LPD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3. In the case of dissolution of this church, the property and assets shall be assigned to the Lower Pacific District of 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if possible for church planting ventures in the district. This church shall be considered dissolved if so decided by the membership, or when this church has not held an annual meeting for three years, or when fewer than six members remain who regularly attend.

교회가 해산되는 경우 교회의 부동산과 자산은 EFCC의 LPD에 귀속되며 가능한 한 LPD 내의 교회개척을 위해 사용되게 한다. 멤버들에 의해 교회 해산이 결정되거나 3년 이상 교인 총회를 갖지 못할 경우, 혹은 정기 예배 참석 인원이 6명 이하일 경우에 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PART IV TERMS OF MEMBERSHIP 멤버의 조건

As a member of 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we will receive any person as into membership who gives testimony to saving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subscribes to our Statement of Faith and Church Membership Covenant, and completes the Membership Process Protocol.

우리는 EFCC의 멤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받는 믿음이 있음을 증언하며, 신앙고백과 교회 멤버 규정을 수락하고, 멤버등록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멤버로 받아들인다.

1. Applicants shall participate in 2 Jubilee Chapel Orientation Seminars and complete an Application Form for Membership

지원자는 두 차례의 주빌리교회 오리엔테이션 세미나에 참가하고 멤버십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Applicants shall be 18 or older.

지원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3. Associate members are defined as (1) those who cannot regularly attend Jubilee Chapel meetings due to sickness, long time leave(for example, mission, business, etc.), etc but want to stay connected to Jubilee community or (2) those who belong to some Korean churches which prohibit their ordained pastors to become members of different churches but want to attend Jubilee Chapel while they are in Canada.

준멤버는 (1) 질병이나 장기 출타(선교나 사업 등으로) 등으로 인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자들, 혹은 (2) 한국에서의 교단 규정에 의해 멤버가 될 수 없으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주빌리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자들로 정의한다.

4. Members have rights to vote at congregational meetings and to become members of Ministry Committee Executive Committee, and/or directors of Board Meeting.

멤버들은 교인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사역위원회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5. Members have obligations to participate in (1) the meeting of Jubilee Chapel such as Sunday Services, Prayer Meetings, and Small Group Meetings. (2) the ministries of Jubilee Chapel as members of at least one Ministry Team (3) a Small Group Meeting of Jubilee Chapel and have fellowship with other members (4)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ministries of Jubilee Chapel by making offerings.

멤버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기도회와 구역예배 등 교회의 정기적인 모임들에 참여하기; (2) 적어도 1개 이상의 사역부서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에 참여하기; (3) 하나의 구역에 속하여 다른 멤버들과의 교제에 참여하기; (4) 헌금을 통해 교회의 재정 및 사역에 참여하기.

PART V TERMINATION OF MEMBERSHIP 멤버자격 종료

1. Membership may be terminated in any of the following ways:

멤버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하나로 인해 종료된다.

1.1. By Death 별세

1.2. By Transfer 전출

At the member's request, the Executive Director may remove a member's name from the roll and forward a letter to the designated church with which he/she is uniting by member's request.

멤버의 요구에 의해 운영위원장은 멤버 등록부에서 멤버의 이름을 삭제하고, 해당 멤버가 요청하는 경우 옮기기를 원하는 교회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

1.3. By Inactivity 무활동

A member who fails to participate for a period of a year shall be considered inactive. If after notification to the last known address there is no response, his/her name shall be removed from the church roll.

1년 동안 교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멤버는 무활동 멤버로 간주된다. 가장 최근 연락처로 연락을 취한 이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그를 교회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2. By Expulsion 출교

The Board of Directors may exclude from membership:

이사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출교시킬 수 있다.

2.1. One who holds a false and heretical doctrine and is not open to correction.

거짓되고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면서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

2.1. One who violates Biblical morality and is unrepentant.

성경의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2.3. One who disturbs the unity and peace of this church and fails to respond positively to reproof.

교회의 하나 됨과 평화를 해치고 교회의 치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

2.4.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only apply the above mentioned means of exclusion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Members who have been excluded and regret their sins, repent, and wish to be reinstated, shall be reinstated according to Part I (terms of membership) above.

이사회는 성경을 엄격히 준수해서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된 이후 죄를 회개하고 다시 멤버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멤버가입 절차를 통해서 다시 멤버가 될 수 있다.

3. Grievance and Reconciliation 불만과 화해

Grievances between members are to be handled in a Scriptural manner.

멤버들 간에 발생하는 불만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3.1. Such members should prayerfully attempt personal reconciliation following the steps in Matthew 18:15-17, Colossians 3: 12, and Matthew 5: 23-24.

해당 멤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8장 15-17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24절의 가르침을 따라 개인적인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

3.2. Accusations against Pastors or other church officials shall be dealt with according to I Timothy 5:19-20.

목회자와 그 외 교회 사무원에 대한 고발은 디모데전서 5장 19-20절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PART VI CHURCH GOVERNMENT 의사결정구조

1.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1.1. Structur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consist of the Lead Pastor and four or more elected members with permanent residency in Canada.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lect from among themselves a Chairman, a Vice-Chairman, and a Recording Secretary. The Chairman will be responsible for chairing Board meeting and Congregational Meetings and shall have ex officio rights in all church organizations. The Vice-Chairman shall assume all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hairman in his absence or inability to function in his role as Chairman. The Recording Secretary shall keep, or cause to be kept, the minutes of all official Board Meetings and Congregational Meetings. Chairman is elected among Board Directors excluding Lead Pastor.

구성: 이사회는 담임목회자와 캐나다에 영주하는 선출된 멤버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 서기를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이사직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재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

이 부재하거나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서기는 이사회와 교인총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원칙적으로 이사장은 담임목회자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 중에서 선출한다.

1.2. Election and Term: The Board Directors shall be elected at the Annual Congregational Meeting with the recommendation of Executive Committee. The ministry periods for Board Directors are 3 years and may be renewed. If vacancy occurs in the Board of Directors, vacant position shall be filled with the recommendation of EC, MDC or 5 or more members and the final approval of EC. The term of filled position is the remainder of vacant position.

선출 및 임기: 이사는 사역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인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역위원회 위원들 중 5인 이상 위원들의 추천과 이사회회의 최종 결의로 총원할 수 있으며, 임기는 결원이 생긴 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1.3. Meetings: The Annual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held at least once a year, between March and May. As needed, more Board of Directors meetings shall meet by the calling of Chairman.

회의: 정기 이사회는 매년 3-5월 중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요청으로 임시 이사회를 모일 수 있다.

1.4. Quorum: Attendance of at least 70% of the board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official action. A 51% majority is required for the decision of general issues.

정족수: 이사회의 개최 정족수는 구성원의 70% 이상이며, 참석 이사의 5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Job Description: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give overall supervision to the society, giving particular emphasis to spiritual oversight and overall vision of the Church.

이사회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와 전체적인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교회의 해산과 재산 처리, 예배당 신축이나 증축, 담임목회자의 청빙, 정관개정, 연간 결산 및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한 후, 이를 교인총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게 한다.

1.6. Custody of Minutes: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meetings shall be signed and dated by the Chairman or Vice-Chairman and the Recording Secretary and kept on file in the Church's office. And the minutes shall be kept online and be opened to church members. In special cases relating to mission and member privacy, the name might be opened as anonymous.

회의록의 보관: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가 서명한 후 파일을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며, 온라인으로도 보관하여 멤버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선교나 멤버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한해서는 익명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한다.

2. Ministry Directors Committee 사역위원회

2.1. Structure: Ministry Directors Committee(MDC) consists of Lead Pastor, Associate Pastor, choir conductor and leaders of ministry groups and fellowship groups. Lead Pastor or Associate Pastor or MDC member who was elected shall preside MDC meetings.

구성: 사역위원회는 담임목회자, 협력목회자를 포함하여 각 부서의 팀장들로 구성되며, 담임목회자나 협력목회자 혹은 사역위원회에서 선출된 사역위원이 회의를 사회한다.

2.2. Term: Serving term of MDC members shall be 1 year and can serve consecutive terms.

임기: 사역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2.3. Meetings: MDC shall be held at least once a month and more frequently as needed to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between each ministry group.

회의: 정기 사역위원회는 각 사역팀의 사역을 실행, 조율, 공유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모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 사역위원회를 모일 수 있다.

2.4. Quorum: In the case of bringing issues to Board of Directors or Executive Committee, attendance of at least 51% of MDC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official action. A 51% majority is required for the decision of general issues.

정족수: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사역위원회의 개최 정족수는 구성원의 51% 이상이며, 참석 사역위원의 51%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을 의결한다.

2.5. Job Description: MDC shall (1) review and adjust the details of departmental events with other departments, (2) recommend Board members, Executive Committee members, Elders, Kwonsa to Congregational Meeting through Executive Committee.

임무: 주어진 부서의 예산과 연례 계획 안에서 각 부서의 행사와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이사, 장로, 권사를 교인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3. Congregational Meeting 교인총회

3.1. Presiding: The Chairman or Vice Chairman shall preside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s.

사회: 교인총회는 이사장이 사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대신한다.

3.2. Structure: Congregational Meeting(CM) is consisted of members and associate memebtrs. Members shall attend Congregational Meetings if possible. Non-members can attend to CM as non-voting observers. When voting is required, only those who have been accepted into membership in Jubilee Chapel are eligible to vote.

구성: 교인총회의 구성원은 주빌리교회의 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주빌리교회의 멤버들은 가능한 한 교인총회에 참여해야 한다. 비회원도 교인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3. Meetings: CM shall be held at least once each year as an Annual Congregational Meeting(ACM) of the Church, and more frequently as needed. Written notice of Congregational Meetings shall be given at two prior Sunday Services. Should emergencies arise, special meetings may be called on shorter notice by the Board or at the signed request of at least 10% of the members in good standing made to the Board Chairman.

회의: 정기 교인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임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교인총회를 모일 수 있다. CM은 적어도 2주일 전에 문서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나 10% 이상의 멤버들이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보다 짧은 공지 기간을 가지고서도 CM이 소집될 수 있다.

3.4. Quorum: Attendance of at least 51% of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official action. A 51% majority is required for the decision of general issues. But at least a 70% majority of attending members is required for major financial issues, constitutional changes or calling a Pastor.

정족수: 개회 정족수는 멤버의 51%이며, 참석 멤버의 5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중요한 재정문제나 정관변경, 담임목회자의 청빙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참석 멤버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Voting: Voting shall generally be by show of hands. On major issues such as hiring or dismissing lead pastor, however, the presider may provide a secret ballot. For important issues, ballot votes may also be called for by a motion from the membership.

투표방법: 일반적으로 투표는 거수로 한다. 그러나 담임목회자의 청빙 및 해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멤버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6. Job Description: CM shall review and vote for (1) dissolution of church, handling church properties, extending or new construction of church building, calling lead pastor, revising the constitution which were decided at the Board of Directors, (2) annual budget and settlement which were decided at the Executive Committee, (3) approve Board members, Elders, Kwonsa, Deacons and other church leaders which were reques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임무: (1) 이사회가 의결한 교회의 해산과 재산 처리, 예배당 신축이나 증축, 담임목회자의 청빙, 정관개정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하며, (2) 이사회에서 의결한 연간 예산 및 결산을 최종 심의, 인준하고, (3) 사역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장로, 권사 및 그 외 교회직분자들을 인준한다.

3.7. Custody of Minutes: Minutes of all Congregational meetings shall be signed and dated by the Chairman or Vice-Chairman and the Recording Secretary and kept on file in the Church's office. And the minutes shall be kept online and be opened to church members. In special cases relating to mission and member privacy, the name might be opened as anonymous.

회의록의 보관: 모든 교인총회 회의록은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가 서명한 후 그 파일을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온라인으로도 보관하여 멤버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선교나 멤버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한해서는 익명 처리 후 회의록을 공개한다.

4. Other Conducts of Meetings 그 외 회의 규정

4.1. Common Courtesy: In all meetings, all members shall follow the basic common courtesy of meeting and the appropriate, standard business procedures such as <The Basics of Robert's Rules of Order>(latest edition).

기본 회의예절: 모든 회의에서 멤버들은 기본적인 회의 예절과 <The Basics of Robert's Rules of Order>(최신판) 등에 나타난 적절하고도 표준적인 업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4.2. Void Ballots: Ballots indicating abstention and blank or spoiled ballots are to be recorded but not included in the computation of percentages.

무효 투표용지: 기권이나 백지 혹은 못 쓰게 된 투표용지는 기록은 하되 퍼센트를 계산하는 데는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4.3. Conflict of Interest: In cases where a member has a perceived or real conflict of interest, he is expected to refrain from voting on that issue at all sorts of meetings(Board of Directors, Executive Committee, Ministry Directors Committee, Congregational Meeting, etc.).

이해당사자의 투표: 모든 회의(이사회, 사역위원회, 교인총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와 결부된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5. Fiscal Year 회계연도

The fiscal year of the church shall be January 1 to December 31.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PART VII DUTIES OF CHURCH OFFICERS AND LEADERS

1. THE ELDERS and THE KWONSAS 장로와 권사

The Elders and the Kwonsas shall strive to meet the biblical requirements of such passages as 1Timothy 3:1-7 & 1Peter 5:1-4. The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piritual oversight of the church and the overall vision as follows:

장로와 권사들은 디모데전서 3장 1-7절 & 베드로전서 5장 1-4절과 같은 구절의 성경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감독하고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1.1. Casting vision

비전을 제시한다.

1.2. Guarding Biblical instruction

성경적 교훈을 준수한다.

1.3.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spiritual gifts among the membership and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significant visionary ministries by those God has gifted.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일들의 계발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에 의한 중요한 비전적 사명들의 계발을 격려한다.

1.4. Promoting the welfare of small groups in order that disciple making continue to take place.

끊임없는 제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그룹의 풍성함을 촉진한다.

1.6. Encouraging the Pastor(s) in their spiritu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목사들의 영적, 전문적 계발을 격려한다.

1.7. Overseeing the provision and development of "Pastoral care" through small groups and assisting where extra or special attention is needed.

소그룹을 통해 "목회적 돌봄"의 규정과 계발을 감독하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돕는다.

1.8. Overseeing the Directors of various aspects of ministry within the Church and participating in the Finance Team and the Search Team.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의 책임자들을 감독하고 재정팀, 청빙위원회 등에 참여한다.

1.9. Encouraging, exhorting, and when necessary carrying out appropriate discipline.

사람들을 격려, 권면하고,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징계한다.

2. THE PASTOR(S) 목회자

2.1. General Qualifications: The Pastor(s) shall strive to meet the qualifications set forth for Elders. And their general duties shall be summarized in Ephesians 4:11-16. They shall devote their time to preaching and teaching the Word of

God, training the members of the Church to use their God-given gifts for ministry.

일반적인 자격: 목사(들)는 장로들과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사(들)의 일반적인 임무는 에베소서 4장 11-16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다. 목사(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교회 멤버들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2.2. Paid Associate Pastors and Staffs: As the needs of the congregation expand and change, the Lead Pastor shall recommend to the Executive Committee the calling of associate pastors or staffs with specific job descriptions, titles and contracting term. Attendance of 70% of the Committe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official action. A 51% majority is required for the decision of calling Associate Pastors and Staffs.

유급 협력목회자 및 스텝: 회중의 필요들이 확장되고 변화함에 따라 담임목회자는 이사회에 구체적인 업무분장, 직함, 계약기간을 정해서 협력목회자나 스텝 청빙을 추천한다. 이사회에 개회 정족수는 구성원의 70% 이상이며, 참석 위원들의 51% 이상의 찬성으로 협력목회자 및 스텝 청빙을 의결한다.

3. MINISTRY TEAMS AND MINISTRY DIRECTORS 사역팀과 사역팀장

3.1. By the recommendation of Ministry Directors Committee, Directors of Ministry shall be appoin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as needed to oversee specific avenues of ministry in the Church. These Directors are encouraged to recruit their own teams and to train, equip and disciple them to accomplish specific ministry goals, as defined in their job descriptions. Each Director will be required to submit a written report to the Annual Congregational Meeting

매 연말 사역위원회는 다음 해의 사역책임자들(팀장들)을 담임 목회자에게 추천하고 담임 목회자는 이를 다음해 주빌리플랜에 포함시켜 교인 총회에서 의결하여 교회사역의 특정한 영역들을 감독하게 한다. 사역책임자들은 자신의 부서의 팀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업무분장에 기술된 대로 팀원들이 구체적인 사역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훈련, 구비, 제자화한다. 각 팀장은 교인 총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2. The Finance Team shall be keep the fiscal records of the Church. The Finance Team Leader shall supervise and account for the receiving and disbursing of the church funds, and be responsible for distributing envelopes and issuing receipts.

재정팀은 교회의 재정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정팀장은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감독하고 설명해야 하며 헌금봉투를 분배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책임이 있다.

3.3. The Maintenance Team shall be responsible for management, maintenance, insurance, and general improvement and security of all church properties and equipment. They shall maintain an up-to-date inventory of church property and submit a copy to the Board annually for filing, and shall acquire and dispose of property as authorized by the Board.

관리팀은 모든 교회 재산 및 장비의 관리, 유지 보수, 보험 및 전반적인 개선 및 안전을 책임진다. 관리팀은 교회 자산에 대한 최신 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매년 이사회에 사본을 제출하여 이사회가 승인한대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해야한다.

4. DEACONS 집사

The Deacons shall strive to meet the biblical requirements of such passages as 1Timothy 3:8-13. They shall be responsible for serving specific ministries of the church.

집사들은 디모데전서 3장 8-13절과 같은 구절의 성경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을 섬긴다.

PART VIII ELECTION PROCEDURES FOR ELDERS AND KWONSAS 장로, 권사 선출 방법

(See also Part VI, 4. Congregational Meeting 교인총회)

1. Elders and Kownsas(women elders) shall be 45 or older and be required to be members of the church for at least one year prior to election. Those so nominating are urged to consider both the Biblical qualifications and the giftedness of the nominee.

장로와 권사로 선출되려는 사람은 45세 이상으로서 투표 전에 적어도 1년 이상 본 교회에 멤버로 출석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로와 권사 후보자는 성경적인 자격과 은사를 가진 자라야 한다.

2. All elections shall be by secret ballot on a simple majority basis. Only members may vote or hold elected office. Attendance of at least 51% of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election. A 51% majority is required for the election.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멤버들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회 정족수는 멤버의 51%이며, 참석 멤버의

5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Any person wishing to abstain from voting on any given issue shall indicate by writing "abstain" on his ballot. This gives silent consent to the decision of the voting members.
어떤 이유로 투표에서 기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투표용지에 기재한다. 이는 다른 멤버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PART IX PASTORAL RELATIONS 목회자 관련 규정

1. CALLING LEAD PASTOR 담임목회자 청빙

1.1.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call the Lead Pastor,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appoint members to as the Search Team. The Search Team and its chair shall be approved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담임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이사회가 멤버들 중에서 청빙위원들을 지명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청빙위원회와 청빙위원장은 정기 혹은 임시 교인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1.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stablish the provisions of the employment contract offered by the Jubilee Chapel, including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the Pastor.

이사회는 담임목회자의 월급을 포함하여 주빌리교회가 제공하는 각종 고용조건들을 작성한다.

1.3. A candidate for a pastoral position shall be extended a call by a minimum of 70% majority vote of the membership present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Voting shall be by secret ballot(비밀투표).

담임목회자로 청빙 받으려면 교인총회에 참석한 멤버들의 7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TERMINATION OF MINISTRY 목회자 사임 및 해임

2.1. The terms of pastoral ministry may be ended upon three months notification in writing on the part of the pastor or the membership, unless this time period is waived by mutual consent.

목회자가 사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전에 목회자가 멤버들에게, 혹은 멤버들이 목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로 합의한다면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2. The Pastor shall first present his resignation to the Board of Directors before it is presented to the membership.

목회자는 멤버들에게 자신의 사임을 밝히기 전에 이사회에 먼저 사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2.3. All action to dismiss a Pastor shall be referred to the Board for its consideration. Action may be taken at a regular or special Congregational Meeting, and shall be by secret ballot, with a vote of 51% necessary to carry the vote of dismissal.

목회자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멤버들이 먼저 이사회에 이 안건을 통보하고 논의하게 해야 한다. 이사회가 이 안건을 정기 혹은 임시 교인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멤버들이 51% 이상이 찬성하면 목회자는 해임된다.

2.4. Apart from action responding to severe moral, doctrinal or ethical failure, the expected way to remove a Pastor will be to pray for the God who brought him to remove him, thus exhibiting the Christian concern that he will be moved in a way that will not be destructive of him, of his family, or of the church family.

심각한 도덕적, 교리적, 윤리적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목회자의 해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목회자는 물론 그의 가족이나 교회 전체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ART X MAKING, ALTERING OR RESCINDING BYLAWS 시행세칙의 제정, 변경, 폐지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and by-laws may be made at a Congregational Meeting of the church by a 70% majority vote of attending members. Amendments must be presented in written form and discussed at a Congregational Meeting at least 1 week prior to the time of their adoption. (PART II was formerly unalterable.)

교회정관과 시행세칙의 수정을 위해서는 교인총회에서 멤버들의 7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수정안은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교인총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멤버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PART XI PREPARATION AND CUSTODY OF MINUTES AND OTHER RECORDS 회의록 및 다른 기록들의 준비와 보관

1. The Treasurer shall keep, or cause to be kept, the minutes of transactions of all business meetings of the Church.
1. 재정담당자는 교회 내의 사업 관련 미팅의 모든 거래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2. The Treasurer shall keep an accurate account of all receipts and disbursements.
2. 재정담당자는 모든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보관해야 한다.
3. The Administrative Pastor(or staff) shall keep a record of membership, names of those baptized, dedicated, married or buried.
3. 행정담당 목회자(혹은 스태프)는 멤버들의 이름과 세례 받은 사람들의 이름, 결혼이나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의 이름을 보관해야 한다.
4. All Directors of Ministry and the Finance Team chair shall prepare an annual report for the ACM.
4. 모든 사역 책임자들과 재정팀은 교인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연례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PART XII EXERCISE OF BORROWING POWERS 금전 차용

The Board may by unanimous vote to borrow an amount not to exceed five thousand (\$5,000) except when approved by a Congregational Meeting called for such a purpose. No debenture may be issued without the sanction of a special resolution by the Congregation.

이사회는 5000불이 넘지 않는 금액을 차용할 때는 이사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금전차용의 목적으로 소집된 교인총회에서 승인된 경우는 이사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PART XIII PROCEDURE FOR CALLING A CONGREGATIONAL MEETING 교인총회 소집 절차

A published notice of a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made for 2 weeks prior to the meeting.
교인총회는 적어도 2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PART XIV INDEMNIFICATION OF DIRECTORS 이사들의 면책

The Society shall indemnify a director against al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any law suite brought against a director while in office, unless it is caused by the director's willful neglect or default.

이사의 고의적인 무관심이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가 책임 중에 당하는 모든 소송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

PART XV ACCOUNTING AND AUDITING 회계와 감사

1. Members shall have the right to appoint an accountant to prepare a financial statement on a review basis or to appoint an auditor of the financial records.

멤버들은 재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계사와 재정보고 감사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

2. A Financial Statement must be laid before the members at the ACM.

재정보고서는 교인총회에서 미리 멤버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